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리도록 의무화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63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리도록 의무화	2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6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

(3) 회 부 일 : 2025.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음.

하지만,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현행법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료·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리도록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률 제2082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2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법률 제2082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5조의2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²⁾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³⁾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또한, 법률 제2082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26.1.1. 시행 예정) 제25조의2제1항 단서4)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개정안은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수입식품 영업자에 의한 정식 수입식품과는 달리 통상적인 수입신고·검사⁵⁾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섭취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20825호)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와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해 원료·성분 함유 식품 등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단계에서 국내반입이 차단⁶⁾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식 수입식품은 총 약 14만 건의 정밀검사 중 1,414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부적합률이 1%에 불과한 반면,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3,400건 중 344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나 부적합률이 10.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2024년 기준 정식 수입식품 및 해외직구식품 부적합건수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건수	검사건수(비율)	부적합 건수(비율)
정식 수입식품	85만 건	14만 건(16.7%)	1,414건(1.0%)
해외 직구식품	2,493만 건	3,400건(0.01%)	344건(10.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법률 제2082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6)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서에서 마약류에 해당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원료·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즉,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제외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25조의2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른 모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법 제25조의2	안 제25조의2
제1항 본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u>임의규정</u>)	(현행과 같음)
제1항 단서 마약류 원료·성분 포함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u>강행규정</u>)	(현행과 같음)
-	제2항 신설 제1항에 따른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릴 수 있도록 함(<u>강행규정</u>)

□ **둘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 사진 등 상당한 양(2025년 10월 11일 기준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재 제품 수 4,164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01종)의 모든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현재도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외에 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정책 브리핑, 카드뉴스, 기획기사, 영업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임.

<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해외직구식품 율바로 홈페이지) >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						
Total: 4164 Articles						
전체 검색 10개씩 보기 엑셀다운로드						
제품명 [A][Q] [B][R] [C][S] [D][T] [E][U] [F][V] [G][W] [H][X] [I][Y] [J][Z] [K][0~9] [L] [M] [N] [O] [P]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ㅇ] [ㅅ]						
번호	제품명	제조사	검출성분	제조국가	등록일	조회수
1	Me Vale Madre	Nutrimed	Diclofenac, Acetaminophen	멕시코	2025-10-02	57
2	Syvor GlucoBio Blood Balance 600 mg	Syvor LLC(유통사)	Bacopa(Bacopa Monnieri)	미국	2025-09-30	74
3	Ayush Herbs Carditone	Ayush Herbs, Inc.(유통사)	Rauwolfia(Rauwolfia root), Terminalia arjuna(Terminalia arjuna bark)	미국	2025-09-30	51
4	Herb Vitality Blood Sugar Support	HerbVitality	Guggul(Guggul Resin), Gymnema sylvestre(Gymnema sylvestre Leaf Powder), Gelatin(Bovine)	미국	2025-09-30	38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목록(해외직구식품 율바로 홈페이지) >

☐ 해외직구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전체 ☐ 지정 ☐ 해제 지정·해제 일자 ~ 원료·성분 명칭 (한글·영문·기타 명칭) 지정·해제 사유						
검색 10개씩 보기 엑셀다운로드						
Total: 303 Articles						
번호	구분	원료·성분명(한글)	원료·성분명(영문)	기타 명칭	지정·해제일	지정·해제사유
1	지정	모르핀	Morphine	-	2025-08-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 제1호
2	지정	코데인	Codeine	-	2025-08-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 제1호
3	지정	테바인	Thebaine	-	2025-08-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 제1호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위해 정보를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전세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특성상 위해 정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실시간 정보 제공이 필요한 점, 모든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간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3